

“사슴 자가도살은 가능, 대신 위생적으로..”

-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생관리기준(안) -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도살 가능성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해 정식 법제화됐다. 다만 자가도살시 위생관리 부문이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과태료 여부를 떠나 양육인들은 철저한 자가 위생관리를 실시, 자가도살시 위생상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불결한 위생관리로 인한 다발적인 민원발생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에서 고시한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된 부분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농림부 공고 제2004-4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년 1월 10일
농림부장관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중 소·말·돼지 및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식품

위생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동 법에 따른다.

제3조(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①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 등 금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생관리)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수시설·배수구 등의 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부산물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자가 도살·처리 기준) ①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자가조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도살·처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1. 구제역·탄저·결핵병·부루세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2. 뉴캐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이푸루엔자·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프스

3.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상풍·농독증·패혈증·뇨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살·처리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라 한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마. 축종별 생산자단체·협회에서 축종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련 회원 농가에 제공할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살·처리전 위생관리

가. 작업장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

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도살·처리중 위생관리

- 가. 도살·처리한 축산물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 나. 종업원 등 도살·처리 작업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소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하여야 한다.
- 다.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칼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라.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장갑·앞치마·장화·칼 등은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 바. 위생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며,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실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살·처리후 위생관리

- 가. 도살·처리한 축산물은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나. 도살·처리후 부산물은 쥐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공간에 보호막 등의 안전장치를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도살·처리후에는 작업장소를 깨끗한 물로 고기찌꺼기 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살·처리후 조리하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도살·처리한 축산물을 깨끗이 세척하여 10℃이하의 온도에서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실온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3]

자가도살·처리 기준

1. 도살방법

- 가. 도살전에 가축의 몸의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 나.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 다.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처리방법

-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장기는 각각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 용기에 담는다.
- 다. 탕지는 가축이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탕지하는 물은 식육이 익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중 관련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第7條(家畜의 屠殺 등) ①가축의 도살·처리, 集乳, 畜産物의 加功 및 보관은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作業場에서 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생략)</p> <p>3. 소·말을 제외한 家畜을 家畜消費에 使用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p> <p><신 설></p> <p>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제7조(家畜의 屠殺 등) ①----- -----가 공 · 포 장-----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 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p> <p>②-----시·도----- ----- -----시·도지 사----- ----- -----</p>	<p>{(第7條(家畜의 屠殺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생략)</p> <p>第47條(過怠料) ①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③ (현행과 같음) <신설></p> <p>第47條(過怠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용한 자</p> <p><신설></p> <p>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p> <p>4.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p> <p>5. 제25조 또는 제 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6.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영업을 한 자</p> <p>7.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저급도살·처리하여야 한다.</p> <p>第 4 7 條 (過 怠 料)</p> <p>①----- ----- ----- -----</p> <p>1.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②~⑤(생략)</p>	<p>8.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p> <p>9.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p> <p>10.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p> <p>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 명령에 위반한 자</p> <p>1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p> <p>②~⑤(현행과 같음)</p>	<p>②~⑤(현행과 같음)</p>